[별첨3]

수도권·비수도권 및 이전 지역인재 구분 기준

- **(구분 원칙)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등을 기준**으로 **대학교 혹은 고등학교 소재지(행정구역)**에 따라 **'수도권/비수도권/이전' 지역인재로 분류**
- **(주요 내용)** 지리적으로 이전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에 포함되나, 지방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**이전 지역인재**는 최종졸업(예정)학교 기준으로, **비수도권 지역인재**는 대학교 졸업(예정)·중퇴자 및 재학·휴학 중인 자를 포함하여 판단

  * (예) 경남소재 고교 졸업,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(미졸업(예정)) : 수도권○, 비수도권X, 이전○
  경남소재 고교 졸업, 서울소재 대학교 졸업(예정) : 수도권○, 비수도권X, 이전X
- **(관련 근거)**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,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

□ 지역인재 인정 요건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

구 분		주요 내용
선택	수도권	1. **대학교 졸업(예정)자 혹은 대학교 재학·휴학생, 중퇴자인 경우** : '대학교*(학사)' 소재지는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, 해외) 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 각 호에 따른 학교(본교) 및 지방캠퍼스(이원화캠퍼스), 동법 제24조(분교)에 따른 분교 등 포함 2. **최종학력이 고졸 이하** : 최종학교 소재지는 수도권 지역
	비수도권	1. **대학교 졸업(예정)자 혹은 대학교 재학·휴학생, 중퇴자인 경우** : '대학교*(학사)' 소재지는 비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, 해외 이외) 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 각 호에 따른 학교(본교) 및 지방캠퍼스(이원화캠퍼스), 동법 제24조(분교)에 따른 분교 등 포함 (경찰대, 각종 사관학교, 평생교육시설, 외국대학의 분교 등 제외) 2. **최종학력이 고졸 이하** : 최종학교 소재지는 비수도권 지역
이 전 (해당 여부)		1. **최종 졸업(예정)학교*(대학원 제외)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(부산광역시 제외)** 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 각 호에 따른 학교(본교) 및 지방캠퍼스(이원화캠퍼스), 동법 제24조(분교)에 따른 분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2. **특별법으로 설치된 학교**(경찰대, 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), **평생교육시설**, **외국학교의 분교 등 제외**

* 기타 사항 등은 채용대행사 혹은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